

폐기물관리법

[시행 2022. 12. 27.] [법률 제19126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07. 5. 17., 2009. 6. 9., 2010. 1. 13., 2010. 7. 23., 2015. 1. 20., 2017. 1. 17.>

1. “폐기물”이란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閉山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2. “생활폐기물 ”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.
3. “사업장폐기물 ” 이란 「[대기환경보전법](#)」, 「[물환경보전법](#)」 또는 「[소음·진동관리법](#)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4. “지정폐기물 ”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·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(醫療廢棄物)등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중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5. “의료폐기물”이란 보건·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·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(摘出物),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·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- 5의2. “의료폐기물 전용용기 ” 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·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.
- 5의3. “처리 ” 란 폐기물의 수집, 운반, 보관, 재활용, 처분을 말한다.
6. “처분 ” 이란 폐기물의 소각(燒却)·중화(中和)·파쇄(破碎)·고형화(固形化)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(海域)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.
7. “재활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 - 가.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 - 나. 폐기물로부터 「[에너지법](#)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써 [환경부령](#)으로 정하는 활동
8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,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9. “폐기물감량화시설 ” 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,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